

의안번호	2213114
의 퇴 인	이학영의원
회 답 일	2025.9.22.
추계번호	25B51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8조의 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제3항)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58조의 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설	×	• 미첨부(제1항 및 제3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	• 미대상(제2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며, 포상금의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 건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